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 2016년 04월 0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육 전반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교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은 총장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보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 제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의 안건조서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업무 주관부서(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견진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 또는 회의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 교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진술이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관리번호

부의 안건 조서

1. 의안번호 :
2. 제 목 :
3. 제안사유 :
4. 의결 요구사항 :
5.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20 년 월 일

주무부서 :

소관부서 :

대학원위원회 위원장 귀하